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99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 공제 가입 의무화 (안 제35조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안 제35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공사업자(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수급인 포함)의 손해 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구체화함(안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 함(제5항).
- 안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자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사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8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 ----- ----- <u>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 ----- ----- <u>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현행	개정안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6의2. ~ 6의6. (생략) 7. ~ 9. (생략) ②·③ (생략)	<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8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u>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자</u> 6의3.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u>공사업자</u> 6의4. ~ 6의8. (현행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와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공사법」은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하고 있음¹⁾²⁾.

- 다만 공사업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을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공사업자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영세 공사업자의 경우 제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2023년 말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2,351개사 중 11,983개(9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함.
-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보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³⁾, 2025년 1월 현재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공제조합 가입률은 85.64%임.
- 현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
 - 2)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4),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23년 전체 정보통신공사 465,391건 중 공사 규모 1억원 미만 공사가 435,092건(93.5%)에 달하며, 60억원 이상 공사는 183건(0.0%)에 그침5).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예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를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 가입 대상

-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를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 타 건설 분야 입법례를 살펴보면, 건설공사 중에서는 소방공사 분야에서만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해당 공사가 공공 발주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타 건설공사 분야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설계·감리 등 기타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건설공사 관련 손해배상 규정 현황>

법률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의무	제재수단
건설산업기본법 ⁶⁾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u>타인</u>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⁷⁾	- 고의 또는 과실로 <u>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u>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u>발주자가 국가·자치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u>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⁸⁾	-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u>타인</u>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
전기공사업법 ⁹⁾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u>시공관리</u> 를 부실하게 하여 <u>타인</u> 에게	-	-

5) ‘정보통신공사실적 통계현황’, 정보통신공사협회

6)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법률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의무	제재수단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안)	-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 하게 하여 <u>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u> 손해를 입힌 경우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u>발주자가</u>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 300만원 이하 과 태료 : 가입비용 미계상 발주자 및 보험·공제 미가입 공사업자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다만,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249호,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설계·감리 등 관련 손해배상 규정 현황>

법률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의무	제재수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¹⁰⁾	-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u>발주청</u> *이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건설기술 진흥법 ¹¹⁾	-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 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u>발주청</u> *이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 정부기관 등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보험·공제 미가입 사업자
건축사법 ¹²⁾	-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 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u>국가·지자체·공공 기관</u> 등의 경우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
전력기술관리법 ¹³⁾	-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보험·공제 가입 의무 - <u>국가·지자체·공기업</u> 등의 경우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	-

10)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1)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¹⁴⁾.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3)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4) 국민권익위원회,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2024.9.9.

- 다만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인 경우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 까지 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우선,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일정 부분 강제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로,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 계약자유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함¹⁵⁾.
- 또한, 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은 근본적으로 공사업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 손해에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음¹⁶⁾.
- 그럼에도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전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15) 헌재 2009. 10. 29. 2007헌바135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것은 공사업자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공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앞서 언급한 타 입법례 또한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에만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의무화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면 비용을 전부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¹⁷⁾,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공공분야 2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손해배상보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

17) 2024년 전체 정보통신공사 규모는 약 19.5조원으로, 보험요율을 평균 0.25%로 가정할 경우 연간 48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임.